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61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 박균택 • 주철현 • 박정현

전현희 • 이건태 • 김현정

김태선 • 박지원 • 황정아

이재강 • 양부남 • 이기헌

정준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.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「특별감찰관법」이 의결(2014년 2월 28일)되어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.

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3월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음. 이로 인하여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

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 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 결하기 위함(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국회는 15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"를 "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"으로, "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"을 "1명의 특별감찰관을임명할 것을"로, "추천한다"를 "요청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특별감찰관 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"을 "요청서를"로, "추천후보자 중에서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,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"를 "1명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15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
- 2. 15년 이상 「감사원법」 제20조의 감찰 업무를 수행한 사람
-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

-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.
-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7조(특별감찰관의 임명) ① 국 제7조(특별감찰관의 임명) ① 국 회는 15년 이상 「법원조직 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법」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-----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 -1명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것을----서면으로 추천한다. 요청하여야 한다. <신 설> 1. 15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 던 변호사 2. 15년 이상 「감사원법」 제2 <u><</u>신 설> 0조의 감찰 업무를 수행한 사 람 <u>(2)</u> ----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 청서를-----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 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 ----1명의 특별감찰관을 임 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 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 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 명하고,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 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 쳐 임명하여야 한다. 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 여야----.

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라 특별감찰관후

<신 설>

<신 설>

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 와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 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 하여야 한다.

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.

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